

한-호주 FTA 및 일-호주 FTA 비교

2014. 11. 28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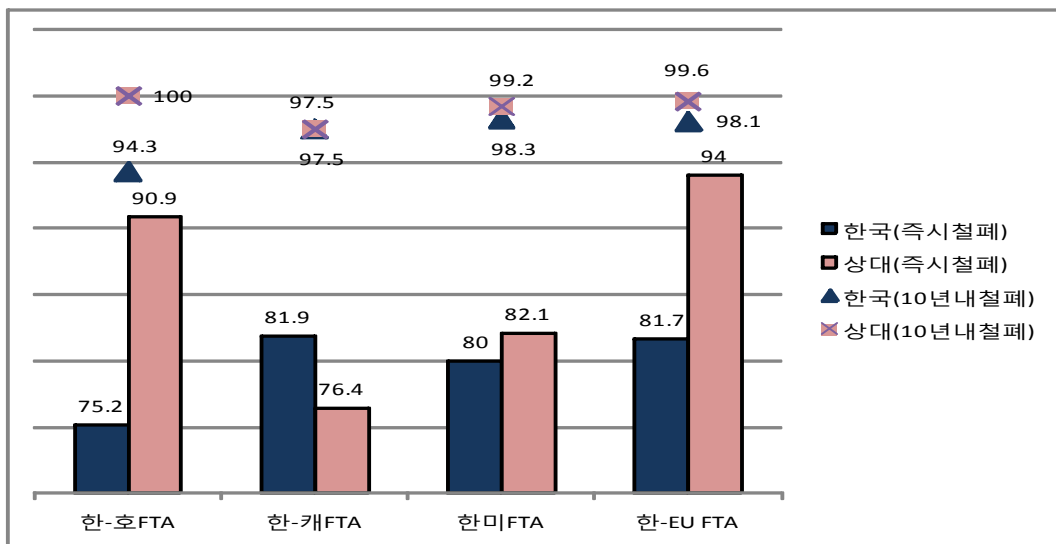
1.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개괄

- 호주·캐나다와의 FTA는 미국·EU와의 FTA에 버금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고강도 FTA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이후 선진국과의 FTA 또한 이와 동등 수준으로 맺게 되는 상황을 맞았음.

가. 상품무역: 높은 수준으로 개방

- 한-호주·한-캐나다 FTA 각각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10년내 철폐비중이 94.3%, 97.5%로, 한미·한-EU FTA보다 낮으나, 즉시철폐비중은 75.2%, 81.9%로 한미FTA보다 높거나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
- 단, 한-호주·한-캐나다 FTA에서 우리측의 양허제외비중은 각기 167개, 211개로 한미·한-EU FTA에 비해 많은 편

<그림 1>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의 상품양허 일정(품목수기준)



나. 서비스, 투자 및 규범: 한미FTA와 유사한 '포괄적 FTA'

- 한-호주·한-캐나다 FTA 모두 서비스·투자의 네가티브 방식 개방과 역진방지조항(ratchet) 포함, 미래 최혜국대우(MFN), 투자에서 ISD 포함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조치가 일단락되어 한-호주 FTA에 따른 이행은 시행령 2건, 시행규칙 1건, 고시 2건 개정뿐
- *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법제개정은 29개 분야의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표 1>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비교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일-호주 FTA
서문	서문	서문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최초규정 및 정의	최초규정 및 정의	총칙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무역	상품무역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및 절차	원산지규정
관세행정·무역원활화	원산지절차·무역원활화	관세행정·무역원활화	관세절차
위생·식물위생조치	위생·식물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및 위생·식물위생조치	위생식물검역 협력
무역기술장벽	표준관련 조치		기술규격,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
무역구제	무역구제	무역구제	
투자	투자	투자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경간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통신	통신	전기통신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자연인의 이동	자연인의 이동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정부조달	정부조달	정부조달
경쟁관련 사안	경쟁정책, 독점·공기업	경쟁정책	경쟁 및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노동	노동	노동	식량공급
환경	환경	환경	경제관계 긴밀화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제도규정·분쟁해결	제도규정 및 행정	제도 규정	
	분쟁해결	분쟁해결	분쟁해결
예외	예외	일반적 규정과 예외	
최종조항	최종규정	최종규정	최종규정

자료: 각 FTA 협정문을 토대로 작성

2. 한-호주 FTA vs 일-호주 FTA

가. 시장접근: 한국이 일본보다 자국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

- o 일본은 호주의 2대 교역국(수출 2위, 수입 3위),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국(수출 3위, 수입 9위)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대호주 협상력 우위
- o 양국의 총교역품 대상 10년내 자유화율은 품목수기준 한국 94.3%, 일본 88.4%이며 무역액 기준으로는 각기 94.6%, 93.7%임.

<표 2>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10대 국가(2013년)

순위	수출		수입		총교역	
	상대국	비중(%)	상대국	비중(%)	상대국	비중(%)
1	중국	31.9	중국	15.0	중국	23.3
2	일본	15.5	미국	11.9	일본	10.9
3	한국	6.7	일본	6.5	미국	8.4
4	미국	4.9	싱가폴	5.4	한국	5.0
5	인도	3.6	태국	4.2	싱가폴	4.2
6	뉴질랜드	3.5	독일	4.0	뉴질랜드	3.3
7	싱가폴	2.9	영국	3.7	영국	3.1
8	태국	2.5	말레이시아	3.3	태국	3.0
9	영국	2.5	한국	3.3	말레이시아	2.8
10	말레이시아	2.3	뉴질랜드	3.2	독일	2.5

자료: <http://www.dfat.gov.au/>

나. 핵심 수입품목인 쇠고기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소폭 개방

(1) 한일간 양허일정 비교

- o 한국) 냉동·냉장 모두 한미/한EU FTA와 동등하게 40%→15년철폐이며 ASG 발동기준은 1년차 155천톤이 매년 2%씩 증량(10년후 185천톤)
- o 일본) 냉동 18년내 38.5%→19.5%, 냉장 15년내 38.5%→23.5%이며 ASG 발동기준은 향후 10년간 355천톤

<표 3> 한-호주 FTA 및 일-호주 FTA 상품양허 일정

		한국-호주 FTA	일본-호주 FTA
추진 경위		2009. 5 협상개시 2014.4.8 정식서명	2007. 4 협상개시 2014.7.8 정식서명
10년내 자유화율 (한국 및 일본)		품목수기준 94.3%, 무역액기준 94.6%	품목수 기준 88.4% 무역액기준 93.7%
對韓 및 對日 농산물 수출	쇠고기	*냉동·냉장: 15년(40%→철폐) -ASG: 1년차 155천톤, 매년2%증량 *대한수출 155천톤(14%, 3위)	*냉동: 18년(38.5%→19.5%) -ASG: 195천톤→210천톤, 10년간 *냉장: 15년(38.5%→23.5%) -ASG: 130천톤→145천톤 10년간 *대일수출 293,000톤(16%, 1위)
	돼지고 기	*냉동삼겹살: 양허제외 *냉장삼겹살/기타: 10년 *냉동기타: 5년	*양허제외
	치즈	*치즈: 13~20년 철폐+TRQ (1년차 4,630톤+매년3%증량)	*10~20년 + TRQ -수입산만 사용할 경우 29.8%부과,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사용시 무세 -1:2.5→1:3.5로 혼합비율 완화
	쌀	*양허제외	*식용: 양허제외
	보리	*겉보리, 쌀보리: 양허제외 *맥주맥, 맥아: 15년+ASG+TRQ	*사료용: 국가무역을 민간무역으로 전환
對濠 공산물 수출	자동차	승용차(5%) 즉시철폐 기타 3년내 철폐	완성차 수출의 약 75% 즉시철폐 기타 완성차 3년내 철폐
	자동차 부품	3년내 철폐	대부분 3년내 철폐
	가전	대부분 즉시철폐	대부분 즉시철폐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한일간 상이한 쇠고기 협상결과의 배경

- 호주의 쇠고기수출국 중 한국은 3위(14%, 155천톤)인 반면 일본은 1위(16%, 293천톤)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협상력에서 열위에 처해 있음.

- 그러나 한국의 대호주 쇠고기수입은 총농산물 수입의 31.3%를 점하는 최대품목이며 이는 국내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55% 점유하는 반면 일본내 호주산 쇠고기는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36% 점유(미국산 15%)로, 협상 시 이를 감안한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음.
- 한국은 이미 한미FTA에서 '15년내 철폐+ASG'로 양허했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 그와 동등 수준에서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한국에서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어느 한 쪽에만 개방할 때에 비해 소비자후생은 증가하나 다른 한편 한우도 가격경쟁을 피하기 어려워 한우농가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 존재
-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BSE감염으로 2003. 12월 수입기준이 20개월령으로 제한되자 이와 경합하던 호주산이 급속히 일본시장을 잠식, 2013. 2월엔 TPP 참가 위해 일본이 미국산 수입기준을 30개월령으로 완화하자 호주는 TPP에 앞서 일본시장을 선점하고자 당초 관세철폐를 철회하되 TPP에 대비한 검토조항을 도입하는 선에서 타협

(3) 일본 '5대 성역' 품목에 대한 검토(review) 조항

- 일-호 FTA에서 호주는 일본이 제3국과의 FTA에서 제3국에 부여한 특혜가 일본시장내 호주산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경우 자국산 제품에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합의
 - 양측은 일본의 제3국과의 협정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검토를 개시하여 6개월 이내에 완료(『일-호주FTA협정문』 2.20장)
- 이는 식용보리(소맥/대맥), 쇠고기, 유제품(탈지분유, 버터), 설탕(일반 조당, 정제당) 등 '5대 성역'* 품목에 대한 일종의 미래MFN 조항
 - * 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 호주가 이를 포함시킨 이유는, 일본이 추후 TPP에 가입하여 미국이나 뉴질랜드에 자국보다 나은 대우를 부여할 것에 대비한 것임.

- 반면 한국은 한미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에 양허했기 때문에 한-호주 FTA에서 호주가 이를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유추

다.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시장 개방 댓가는?

(1) 한-호주 FTA에 ISD 포함된 반면 일-호주 FTA에는 IDS 제외?

- 2013년 9월 집권한 호주의 Abbott 총리는 취임후 1년내에 한중일 삼국과의 FTA 협상을 모두 타결하겠다고 선언, 그는 이전과 달리 ISD에 관해서도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자세로 전환
- ISD의 남소(濫訴) 가능성, 단심제로 인한 정책주권 훼손 우려가 국내 외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진적 사법체계를 갖춘, ISD에 소극적인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ISD 도입이 절실했나? 오히려 이를 진일보한 ISD로 바꾸는데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은 무리였나?
- “호주정부가 한국정부의 ISD 포함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한국시장에의 접근증대를 위함이다”(『Sydney Morning Herald』, 2014. 4. 7)

(2)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로 일본과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

- 호주는 2017년까지 해외자동차업체가 모두 철수할 예정이어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즉시철폐는 호주가 농산물수출을 위한 ‘협상카드’의 성격이 강해 이를 우리측의 성공적 협상결과로 제시하기는 곤란
 - 호주의 좁은 내수시장, 높은 인건비와 호주달러 등으로 2008년 미쓰비시가 철수, 포드(2016년), GM과 도요타(2017년)도 철수 예정
 - 그로 인해 호주는 미국, 일본에 대해 이미 5% 관세의 즉시철폐를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도 이와 동등한 조건을 받은 것임.
 - “호주산 쇠고기의 대한수출을 위해 호주정부가 자동차제조업자를 희생으로 삼았다”(『Australia』, 2014. 4.) 는 시각도 호주내에 존재

라. 결론

- 한-호주 FTA는 국내 제조업체의 대호주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농수산업 특히 축산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한-호주 FTA는 비슷한 시기에 서명된 일-호주 FTA에 비해 우리가 대호주 최대수입 농산물인 쇠고기 관련 협상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 냈는지 정부가 답해야 할 것임.
 - ISD나 자동차가 반대급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특히 ISD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해 명분보다 실리를 따르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부족했던 점을 아쉽게 평가함.
- 정부가 지난해 말 TPP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TPP 가입에 대비해 서둘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함에 따라 오히려 이들에 대한 협상력을 저하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됨.
- 애초에 미국이라는 농업대국과 고강도 FTA를 맺게 됨에 따라 이후 미국보다 농업경쟁력이 강한 나라들과의 FTA에서 미국과 동등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따라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자초
- 정부는 이러한 고강도 개방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업경쟁력 제고 및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입증해야 하며 만에 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내대책 마련에도 전력투구해야 할 것임.

3. 한-캐나다 FTA

- 한-캐나다FTA 관련, 정부는 이와 동시에 비준을 요청하는 한-호주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견해 피력이 곤란함.
 - 최소한 캐나다측의 정보 제공 및 한-호주 FTA 관련 정부의 정보 제공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캐나다 FTA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이에 관한 평가가 가능할 것임.